

- 충청북도 청주시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4월 13일

○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3. 제안사유

○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

○ 위탁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위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위탁 주요사무

- SB플라자 입주공간 운영 및 시설관리
- 전략적 입주 기업·기관 유치

- 과학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홍보, 마케팅
- 과학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 청주 기능지구 및 SB플라자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충북도와의 연계 협력 업무 등
- 그 밖에 SB플라자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사항임.
- 본 시설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험과 과학기술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2항에 의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최초(1차) 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재위탁(계약) 시 의회동의 필요.**

※ 現 수탁기관 : (사)충북산학융합본부 / 원장 노근호
- 기간 : '18. 6. 1.~'21. 5. 31.(3년) *1차 위탁

나. 종합의견

-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기초원천연구성과의 과학사업화 및 청주기능지구 산학연 거버넌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액 국비로 건립된 시설임.

-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청주기능지구의 핵심시설로 과학기술 전문성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과 재정 규모가 안정적이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관리·운영이 필요하고 타당함.

- 또한, 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사무 간소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출연연구소 및 전문단체에 민간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기관이 지자체의 업무 지원은 물론 과학벨트 기초연구 성과를 대학과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고, 국가 및 충북도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 관리부서에서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방만 운영, 부실 운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기관 현황

- 기관명 : (사)충북산학융합본부 ※ 원장 : 노근호(무보수, 비상근)
- 설립일 : 2012. 6. 20.(민법 제32조,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사단법인)
- 이사회 : 15명(이사장 : 충청북도지사)
- 기본재산 : 현물 / 기업연구관 II (4,108,162천원)
- 주요사업
 -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지역활력프로젝트
 - 산학융합 R&D지원사업, 프로젝트 LAB, 비즈니스 LAB
 - 과학사업화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 시제품제작, 장비활용, 해외마케팅 등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일학습병행사업
 - 충북인재 지역안착프로젝트
 - 바이오 벤처기업 입주지원 및 관리(기업연구관·청주SB플라자)
- 조직·인력 : (사)충북산학융합본부 2실 4팀(33명)

□ 추진실적

○ 연도별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조직·인력	2부 5팀 23명	2실 5팀 27명	2실 5팀 33명
예산액	4,542,229천원	5,957,755천원	9,606,833천원
임대료 수입	107,987천원	262,477천원	311,145천원
회의실 수입	1,452천원	6,852천원	18,447천원
입주기업 수	13개 기업	13개 기업	12개 기업
과학사업화 추진사업	-	400백만원 / 6개기업	400백만원 / 6개기업
입주기업 지원실적	인력양성 8명	4개 사업 / 318,870천원 인력양성 13명	6개 사업 / 403,914천원 인력양성 16명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지원 및 시설 관리
2. 과학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홍보, 마케팅
3.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플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플라자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5. 삭제 <2020. 12. 18.>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8.]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